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하수도 부지 무상사용허가 대상에 행정재산 포함〉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66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공하수도 부지 무상사용허가 대상에 행정재산 포함	2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7일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수도가 도로, 철도 등 행정재산의 하부에 매립될 수 있는 시설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부지에 수도관로·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국유재산(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원활한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유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인 토지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Ⅲ. 검토의견

1. 공공하수도 부지 무상사용허가 대상에 행정재산 포함

개정안은 공공하수도 관련 사업에 필요한 토지 무상사용허가 대상에 행정재산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64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양여) 국가는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64조(국유지의 무상사용 등) ---- ---국유재산----- -----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대 부·양여 또는 사용하게 할----- ----.

「국유재산법」 제6조¹⁾는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²⁾하면서, 행정재산은 “사용허가”(제2조제7호)로, 일

1)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반재산은 “대부계약”(제2조제8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유상·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동법 제4조⁴⁾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타법을 따를 수 있는데, 현행 「하수도법」 제64조는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하여는 현행 「하수도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⁵⁾, 제34조(사용료의 감면)⁶⁾의 적용을 받게 됨.

2)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차이]

구분	행정재산				일반재산
종류	공용재산 (청사, 관사, 학교, 기숙사)	공공용재산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사용 사무용, 기업용, 직원 주거용 재산)	보존용재산 (문화재, 사적지, 국유림)	행정재산 이외 모든 국유재산
관리 처분 여부	처분 등 제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대물변제·출자, 사권 설정 X 단, 양여 가능(3가지) 조건 : 행정사무 이관, 관리청 변경, 공유수면 관리양도				처분 가능 사권 설정, 현물출자, 대물 변제, 매각, 교환, 양여
허가 /대부	사용·수익 허가				대부·양도 계약

자료 :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 재구성

3)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④ (생략)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라 행정 재산의 무상사용을 허가받을 수 있으나, 실제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그 사용허가 기간도 1년으로 제한되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인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법」상 무상사용허가 대상 규정에 행정재산을 포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과 공익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특히 「수도법」에서도 행정재산을 포함한 국유재산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고려할 때, 상수도사업과 유사하게 하수도사업을 위한 토지 무상사용허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수도법 입법례]

「수도법」

제77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는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수도관로
2.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6)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도로·주차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

문 의 처

02)6788-5546